

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7. 4

(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정열

나. 제안사유

- 『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』의 제21조(적용의 특례 등)제1항 및 『주택법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과 『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』 제77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) 및 제78조(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)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여 화순군 소도읍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(안 제2조)
 -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·개설 사업지역 안에서 주거 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.
 -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·개설사업지역중 기존주거 밀집지역(단, 상업지역을 제외한다)안에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적용.
- 관련근거 :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『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』에 근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국민주택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또한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하는 등 소도읍사업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,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었기
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결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화순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

화순군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』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) ①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·개설 사업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『주택법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.

②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·개설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(단, 상업지역을 제외한다)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(공동주택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『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